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91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김병기·김주영·박균택

박 정 • 모경종 • 문진석

윤종군 • 이개호 • 정성호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

임(안 제22조제3항).

법률 제 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외부전문가"를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 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	③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	
의 비용으로 <u>외부전문가</u> 를 선	<u></u> 「변호사법」 제40
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	조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
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	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
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	<u>나 외부전문가</u>
구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